# 회 계 규 정

제정2012. 5.23개정2013. 2.28시행2013. 2.28개정2013. 7.24시행2013. 7.26개정2013.10.23시행2013.10.23개정2015. 3.24시행2015. 3.25개정2015.11.20시행2015.12. 7개정2017. 2.20시행2017. 3. 1개정2020. 5.27시행2020. 6. 1개정2020.11.25시행2020.11.30개정2021.10.27시행2021.10.31개정2025. 7.23시행2025. 8. 1

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공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련 법령, 정관, 고정자산 운영관리규정에 따로 정하여져 있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5.11.20>
- 제3조(회계연도)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- 제4조(회계연도 소속구분)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, 부채 및 자본 의 증감 변동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

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.

- 제5조(회계처리) ①공사의 회계처리는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정규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.
  - ②공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,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.
- 제6조(회계구분) 공사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(혹은 기금회계)로 구분하며, 특별회계(혹은 기금회계)는 필요한 경우에 설정할 수 있다.
- 제7조(회계단위) ①공사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하되사장이 총괄한다.
  - ②제1항에서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부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.
- 제8조(회계담당) ①공사의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담당을 둔다.
  - 1.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
  - 2.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
  - 3.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
  - 4.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 취급담당
  - 5.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 관리담당
  - 6. 재고자산, 고정자산 및 물품 기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 관리 담당

- ②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. 단, 정원과소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공사는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④제3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와 보험금액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9조(회계업무의 인계, 인수) 회계업무의 인계, 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후 인계자,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회계관계직원의 책임) ①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.
  - ②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1조(회계관계직원의 직인 사용 등)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 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.
  - ②직인의 비치, 규격, 내용, 보관, 관리,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12조(채권 채무의 소멸시기) ①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라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시효이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을 소멸할 수 있다.

- 1. 공사의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기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
- 2. 공사의 채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 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
- 3. 공사의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 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
- 4. 공사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 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
- 5.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
- 6.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았을 때
- 7.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
-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 대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회계서류의 보관 등) 회계서류의 보관, 편철, 열람, 보존, 대출 및 복사는 공사의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4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 제2장 자금 <개정 2017.3.22.>

제15조 삭제 <2017.3.22.>

제16조 삭제 <2017.3.22.>

제17조 삭제 <2017.3.22.>

제18조 삭제 <2017.3.22.>

제19조 삭제 <2017.3.22.>

제20조 삭제 <2017.3.22.>

제21조 삭제 <2017.3.22.>

제22조 삭제 <2017.3.22.>

제23조 삭제 <2017.3.22.>

제24조 삭제 <2017.3.22.>

제25조 삭제 <2017.3.22.>

제26조(자금계획) 운영계획에 의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기하기 위한 자금의 유효한 조달 및 운용을 위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27조(자금운용) ①자금의 운용은 자금계획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초과집행의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사전에 자금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.

②자금은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, 기획재정부의 자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.

### 제3장 회계처리와 회계장부

### 제1절 통칙

- 제28조(거래의 처리)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.
- 제29조(회계양식)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회계양식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.
- 제30조(계정과목) ①공사의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포괄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.
  -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·계속성·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  - ③계정과목의 설정 및 분류, 배열은 회계기준 및 회계정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④계정과목의 신설, 변경, 삭제 등 개정은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# 제2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

- 제31조(재무제표의 종류)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.
  - ②재무제표는 정규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작성된 정확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한다.

- 제32조(재무제표의 작성) ①인식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, 부채, 수익,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고, 측정은 재무 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해 그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측정 속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한다.
  - ②제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.
    - 1.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.
    - 2.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,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.
    - 3.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.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.
    - 4.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.
- 제33조(비용과 수익의 대응)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모든 수익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총액주의) ①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,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자산·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35조(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) 수선비로서 그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수익적 지출로 하고 그

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.

제36조(본·지사 계정) 본사와 지사 상호간의 자금 기타 거래는 일체 본·지사 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급요령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# 제3절 장부

- 제37조(회계장부)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며,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.<개정 2020.11.25.>
  - ②주요부는 일계표와 총계정원장으로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기타보조장으로 한다.
- 제38조(일계표) 일계표는 계정과목 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한다. <개정 2020.11.25.>
- 제39조(총계정원장) 총계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각 계정의 차변 또는 대변의 합계금액을 전기한다.
- 제40조(보조부)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보조장은 주요부에 대한 당해 계정의 거래일체를 명확히 분석 기입하는 것으로 전표에 의하여 개별기장하되 매월말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 대조를 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.
- 제41조(기장사무 분리) 주요부와 보조부의 기장사무는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.

- 제42조(장부의 작성) ①모든 거래는 각 업무단위별 전산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한다. <개정 2020.11.25.>
  - ②회계거래 입력 내용과 장부 작성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.
- 제43조(장부마감) 장부의 마감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.
  - 1. 현금출납부 및 예금원장은 매일 마감으로 한다. 단, 예금원장의 마감은 잔액표시로 마감에 대할 수 있다.
  - 2.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원장과 기타 보조장은 매월 마감으로 한다.
  - 3. 모든 장부는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말로써 폐쇄하고 차기에 계속할 수 없다. 다만, 유형고정자산대장은 예외로 한다.
- 제44조(장부의 오기 정정) 장부의 오기사항은 수정분개를 통한 추가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한다.

[본조개정 2020.11.25.]

제45조 <삭제 2020.11.25.>

- 제46조(장부의 이월) 회계연도말에 있어서 재무상태표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년도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할 수 있다.
- 제47조(장부의 확인) 회계처리 담당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을 확인 하여야 한다.
  - 1. 각 회계단위관리자는 마감결재시 장부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2. 지출관리자는 매월말 거래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

- 장부상 예금잔액과 확인하여야 한다.
- 3. 지출관리자는 수시로 보관금액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장부잔액과 대사하여야 한다.
- 제48조(장부의 보관) ①모든 장부는 전자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이해관계자와 기타 감사기관의 회계자료 요청시 전산시스템 출력 물과 지출원인행위 결재문서 등을 출력하여 자료 제공할 수 있다.

## 제4절 전표

- 제49조(전표의 종류) ①전표는 입금, 출금, 대체전표로 구분한다.
  - ②입금전표는 현금을 수납할 때 출금전표는 현금을 지급할 때 사용 하며 기 이외의 거래는 대체전표를 사용한다.
- 제50조(전표의 기준)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해야 한다.
- 제51조(전표의 취소 및 정정) 분개 정리 후에 전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정정전표를 작성한다. <개정 2020.11.25.>
  - 1. <삭제 2020.11.25.>
  -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, 기타 기재사항의 오 기를 정정할 때에는 수정분개를 통한 추가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한다.
- 제52조(전표의 심사) 전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전표기재사항에 대한 오류유무
- 2. 관계자인의 누락유무
- 3. 소정의 표시인 누락유무
- 4.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여부
- 5. 기타 전표 작성상 불비한 사항

제53조(전표의 보관) 전표는 일일단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.

# 제5절 증빙서

제54조(수납 증빙서) 자금의 수납은 입금전표에 의한다.

제55조(지출 증빙서) ①자금의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, 전표에 의하되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단,「법인세법」등 관련 법령에 의 해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 증빙서 에 대해서는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4> <개정 2015.11.20>

- 1. 물품구입대금의 지출: 지출결의서, 검수보고서 또는 납품확인서, 세금계산서
- 2. 도급공사비의 지출:지출결의서, 준공검사서 또는 기성고조서, 세금계산서

- 3. 출장비 및 인건비 지출: 여비지출결의서, 인건비지급조서
- 4. 용역계약대금의 지출:지출결의서, 검수보고서 또는 이행확인서, 세금계산서
- 5. 기타지급: 지출결의서, 청구서, 영수증
- 6. 상기 제1호 내지 제5호의 증빙서 이외에 자금지출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지출결의서는 회계부서에서 작성한다.
- 제56조(증빙서 보관) 증빙서의 보관은 회계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.
- 제57조(증빙서류의 생략) 오기 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그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58조(지급증)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징구하기 어려운 때와 경조비 및 시내여비는 지급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- 제59조(영수증) 거래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  - 1. 영수금액, 일자, 영수자의 주소, 상호, 납세번호 및 날인을 선명히할 것
  - 2. 영수의 인감은 계약당초의 등록인감(청구서의 인감)과 일치 할 것
  - 3. 영수증의 정정 개소에는 영수자의 인을 날인할 것
- 제60조(증빙서의 출납 표시) 증빙서에는 일자 및 금액, 계정과목 등을

### 제4장 금전회계

- 제61조(금전의 범위) ①금전은 현금·예금·수표·우편환증서를 말한다.
  - ②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.
- 제62조(금전수납 사무의 대행) 공사 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63조(수표 및 어음) ①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은 사장의 명의로 행한다. 다만, 사장이 위임을 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.
  - ②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,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수표 또는 어음을 폐기한 때에는 소인을 하여 당해은행에 문서로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64조(단기자금의 차입) 단기자금의 차입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- 제65조(수납의 원칙) ①수납은 현금,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, 국고수표,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기타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당좌수표, 어음 등에 의해 수납할 수도 있다.

- ③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현금으로서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.
- 제66조(수입금 및 채권의 관리) ①공사의 모든 수입금 및 채권은 그수입금과 채권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.
  - ②수입금 및 채권의 납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, 정부 지침, 공사 규정, 별도의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[본조 전부개정 2021.10.27.]

제66조의2(납입의 독촉)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. 다만, 사장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[본조 신설 2021.10.27.]

제66조의3(장기미납금의 처리)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보전처분, 제소 등 사장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다만,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[본조 신설 2021.10.27.]

- 제67조(출납책임자)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업무는 금전출납자를 임명하여 담당케 한다.
- 제68조(출납) ①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은 회계책임자 또는 출납책임

자가 날인한 전표에 의한다.

- ②지출은 은행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도금, 가지급. 소액지급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인건비, 예비비 또는 공사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를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.
- ④수납된 금전은 거래은행에 당일중 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마감후 거래분은 예외로 한다.
- 제69조(지출원인 행위 결의서의 작성) ①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.
  - ②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출원인행위 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.
  - ③비용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    - 1. 공공요금, 제세공과, 인건비, 협회비
- 2. 법령,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, 기타, 정례적인 확정경비제70조(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) ①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약,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는 내부 결재로 대신할 수 있다.
- 제71조(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송부)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 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72조(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)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
- 제73조(전도금의 교부)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 또는 가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 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.
  - ③전도금은 명시된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④가지급 취급자는 가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가지급 금을 정산하여야 한다.
- 제74조(전도금 절차) ①전도금의 전도절차는 전도자금청구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- 1. 전도사유 및 용도
  - 2. 정산예정일
  - 3. 전도금액
  - 4. 기타 관계사항
  - ②전도금은 집행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서(품의)에 의거 정산

대체하여야 하며, 만일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산마감일 내에 우선 전도금 집행잔액을 입금조치하고 필요시에 재 전도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③정산 증빙서류는 전도품의에 명시된 사용목적의 내용과 거래 사실이 입증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제75조(선급금과 개산금) ①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.
  - ③선급금과 개산금 지급의 범위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3항에 의한 회계사무규칙을 준용한다.
  - ④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3.10.23>
- 제76조(시재액 조회) ①출납담당자는 매일의 시재금을 실사하여 현금 출납부 및 일계표의 잔고와 상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②출납담당자는 매월말에 은행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③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회계책임자가 정기(매월) 또는 수시로 검사 또는 확인을 행하고 장부잔고와 대조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결산

- 제77조(결산) ①결산은 연차 결산으로 한다.
  - ②제1항의 결산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결산에 준하여 중간결산을 할 수 있다.
- 제78조(결산절차) 결산시점에 이르러 시산표를 작성하여 원장기입의 전부를 확인한 후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.
  - 1. 원장내에 필요한 계정의 수정
  - 2. 순손익의 산정(집합손익계정)
  - 3. 순손익의 처분
  - 4. 잔액있는 계정의 처리
- 제79조(결산승인) ①공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,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(이하 "회계감사인"이라 한다)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
  - 2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

- ②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3월 말일까지 주주 총회에서 결산을 의결·확정하여야한다.
  - 1. 재무제표(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서류
- 2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- 제80조(영업보고서 제출) 공사는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영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81조(공사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) ①공사는 이익준비금, 사업확장 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·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혐의하여야 한다.
  -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,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2조(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) ①업무관련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 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,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(이하 "선임위원회"라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선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  - ②선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사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- ⑥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7항, 제4조제7항, 제6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, 자격, 선임, 권한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인"은 각각 "회계감사인"으로, 회사는 각각 "공사"로, "감사인선임위원회"는 각각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"로 본다.
- 제83조(손해배상책임)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, 이사,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인"은 각각 "회계감사인"으로, "회사"는 각각 "공사"로, "제4조"는 각각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3조로 본다.
- 제84조(손익금의 처리)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.
  - 1. 이월손실금의 보전
  - 2.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

- 3. 국고에의 납입
- 4.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
- ② 그 외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
- 제85조(미결산 계정의 정리) ①미결산계정은 결산시까지는 본계정에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.
-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말 결산시까지 본계정에 대체정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정리사유를 주기하여 명시 이월하여야 한다.
- 제86조(월말보고) 회계책임자는 매 월말 현재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
  - 2. 각 계정명세 및 부속서류
  - 3. 예산집행 실적표

# 제6장 계약

- 제87조(계약의 원칙) ①물품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.
  - ②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  - ③계약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르

- 고, 동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기획재정부계약예규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21.10.27.>
- ④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시행한다. 다만, 특수한 물품의 제조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계약의 시방서, 지침 등 주요사항은 발의 부서에서 정할 수 있다.
- 제88조(계약서의 작성) 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, 이행기간, 보증금, 계약위반시의 보증금 처분, 지체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계약서는 사장의 명의로 한다. 다만, 사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- 제89조(계약서 작성 생략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20.5.27.>
  - 1. 계약금액이 3,000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 - 2. 경매에 부치는 경우
  - 3.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
  - 4. 정부("지방자치단체"를 포함한다. 이하같다)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 - 5. 전기・가스・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

하지 아니한 경우

- 제90조(계약 보증금)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보증금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(시중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포함)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, 공사를 피보험자로한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증권을 현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및 단가계약 또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
  - 2.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 매회별 예정량중 최대량에 예정가격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
  - 3.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 ②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5.27.>
    - 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7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
    - 2. 계약금액이 5,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   - 3.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각서를 제출케하여야 한다.
- ④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.
- 제90조의2(인지세 부담) 인지세는 「인지세법」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를 상호 균등하게 납부하여야한다.

#### [본조 신설 2021.10.27.]

- 제91조(하자보수 보증금) ①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내로 하며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. ②제1항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검사후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게
  - 하여야 한다. 다만,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이 필요치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- ③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내지 5년 이내로 한다.
- 제92조(대가의 지급) ①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이행에 대한 검수일이 청구일보다 뒤에 있는 경우에는 검수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0.23>
  -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

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0.23>

-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10.23>
-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. <신설 2013.10.23>
- 제93조(대가지연에 대한 이자) 제9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(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)를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10.23>
- 제94조(검수보고서 작성) ①공사나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대 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담당검수자로 하여금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②계약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기성부분 또는 물품의 기납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를 지급할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야 한다.
  - ③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이행 완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13.10.23>

제95조(지체상금) 계약자의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한 것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에 따른다. <개정 2020.5.27.>

제96조(수의계약)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2.28.> <개정 2017.2.20.> <개정 2020.5.27.>

1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. 단,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 6조에 따른다.

가. <삭제 2020.5.27.>

나. <삭제 2020.5.27.>

- 2. <삭제 2017.2.20>
- 3. <삭제 2017.2.20>
- 4. <삭제 2017.2.20>
- 5. <삭제 2017.2.20>
- ②재공고 입찰 또는 재지명 입찰에 붙인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. <신설 2017.2.20>
  - ③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체결 후 소정의

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, 계약이행에 착수 한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자와 수의 계약을 할수 있다. 다만,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입찰에 붙일 때 정한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. <신설 2017.2.20>

- 제97조(견적서 징구) ①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0.> <개정 2020.5.27.>
  - 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6조 제1항 제2호, 같은 항 제5호 마목,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계약의 경우
  - 2.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, 다만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제5호가목5)가)부터 다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.
-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서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에 따른다.<신설 2020.5.27.>
- 제98조(계약심의위원회 설치) ①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10.23> <개정 2025.7.23>
  - 1.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반조치(계약해제,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)의 결정 및 제반 조치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 - 2.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진정, 건의, 질의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사항
  - 3.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·구매·용역 등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및 기타 계약관련 자문
  - 4.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 추진 시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사항
  - 5. 동일업체와 동일내용의 추정가격 300만원 초과인 수의계약을 3 회 이상 추진 시(매 3회마다) 수의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
  - 6. 기타 계약에 관한 중요한 방침 또는 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사장이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
-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계약담당 국장이 된다.
-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계약담당 팀장이 된다.
- ⑤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선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

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- 제99조(계약관련 정보의 공개) 계약담당자는 2,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분기별 발주계획,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내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00조(청렴계약) ①사장은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- ②계약담당자는 공사·구매·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,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③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.
- 제100조의2(공정거래 계약)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과 계약체결 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1.10.27.]

# 제7장 물품 및 고정자산

제101조(물품 및 고정자산의 정의) ①물품이라함은 유형고정 자산을 제외한 일체의 유체물로서 소모성, 공기구, 사무용품, 발간물 등 이에

준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.

- ②고정자산이라함은 공사가 사업에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, 구입, 개량, 증설, 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, 건물, 기계장치, 구축물, 차량 운반구, 공기구비품 등 유형고정자산과 제가입권, 제신용권, 수리권, 기타 권리 등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.
- ③고정자산중 토지, 건물 및 산업재산권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- 제102조(조달절차) 물품 및 고정자산의 조달은 담당국이 수요부서의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량을 선정 구입한다.
- 제103조(검수 및 입고절차) 물품 및 고정자산의 검수 및 입고절차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.
  - 1. 물품 및 고정자산의 검수는 구입품의서, 계약서, 사양서, 도면 또는 견본, 물품명세서 등 관계서류에 의거 물품을 정밀히 대조 검토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.
  - 2. 검수는 사장이 지명하는 검수자가 하고 필요에 따라 수요부서의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.
  - 3. 특수물품에 있어서 기술적인 검수가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.
  - 4. 검수결과 불합격품, 수량부족 및 규격상이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또는 기타 필요한 수속을 취하여야 한다.
  - 5.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금지불증빙서를 사용한다.
  - 6. 검수가 완료되면 입고표에 의하여 품종 규격별로 대장에 기입한

- 후 보관 및 사용한다. 다만, 입고표는 검수보고서로 대용할 수 있다. 제104조(관리책임자) ①물품 및 고정자산은 당해 업무 담당 국장이
  - 총괄관리 한다.
  - ②본사 및 지사에는 자산관리 담당자를 두며 소관 물품 및 고정 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.
  - ③본사의 각 실·국에는 분임 자산관리 담당자를 두며 소관 고정 자산의 관리책임을 진다.
  - ①총괄 관리자, 자산관리 담당자 및 분임 자산관리 담당자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05조(변상) 관리책임자는 관리하에 있는 물품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태만히하여 손망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06조(장부원가) 고정자산의 장부원가는 취득원가에 의한다.
- 제107조(물품의 불출) 물품의 불출은 물품의 정수 및 소모기준에 의하며 자산관리 담당자는 월간 소요량의 1할의 범위내에서 재고를 보유할 수 있다.
- 제108(재물조사) 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연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09조(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) ①고정자산 중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- ②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동법

시행령, 공사 정관 및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을 따른다.

- 제110조(불용품) ①고정자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.
  - 1.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
  - 2. 변형.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할 수 없는 것
  - 3. 공사의 업무상 용도가 소멸된 것
  - 4.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것
  - ②고정자산의 불용결정서에는 매각, 폐기, 증여 등 처분방법을 명시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11조(물품의 관리기준) 총괄 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정수, 소모기준 및 소모기준 경과후의 처리 등 관리기준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.

# 제8장 내부감사

제112조(내부감사)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제9장 내부회계 관리제도

제113조(내부회계관리제도) ①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공사의 재무제

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· 공시되었는지 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· 운영되는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공사의 이사회,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 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. <개정 2013.7.24> ②사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③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④제2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본부장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로 한다.

#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전에 발생한 회계처리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<2013.2.28.>

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3.7.24.>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3.10.23.>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5.3.24.>

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5.11.20.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7.2.20>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7.3.22.> (예산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사규의 개정) ①「회계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예산의 제15조 내지 제25조 규정은 삭제한다.

제2장 예산은 제2장 자금으로 변경한다.

#### ② 생략

# 부 칙<2020.5.27>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0.11.25.>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1.10.27.>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5.7.23.>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